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-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명칭 변경: 경제부지사 → 정무부지사
-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
 - 행정부지사: 도 행정사무 전반
 - 정무부지사: 정무 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

5. 검토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제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,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각 분장사무의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행정부지사의 사무 중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
 - 정무부지사의 사무 중 기존 ‘경제통상국, 과학인재국, 투자유치국, 바이오식품의약국, 환경산림국,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’을 ‘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와 회의 참석’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며, ‘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’ 사무의 내용이 담긴 호를 신설함(안 제4조제3항제3호).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¹⁾한 후 약 4년 7개월 만에 다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으로, 민선8기 후반기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부지사의 도민과 도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각종 단체와의 소통과 협조 등 정무적 업무수행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1) 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(충청북도조례 제4351호로 2020. 1. 1. 일부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): <정무부지사 명칭 변경> 정무부지사 → 경제부지사(제4조)